

『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7월 6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7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7월 10일

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의 건물·부지 임대기간이 '09. 12. 31로 만료되어 이를 매입하여 벤처창업기업에 특화 공간 제공 및 각종 지원시설로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발전과 신규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자 함
-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에 대한 면발전지원기금 추진사업인 태양광발전소 건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유임야인 산동면 도중리

산 116번지와 산동면 발전협의회 소유인 선산읍 생곡리 산48-1번지의 2필지를 교환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유림 집단화를 통한 활용가치 및 재산가치 상승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됨

다. 주요내용

【 취득재산 】

☐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

- 토 지 : 10,200m²
- 건 물 : 6,951.24m²
- 예정가격 : 3,118,995천원(가감평가 기준)

☐ 선산읍 생곡리 산48-1번지 외 2필지(교환)

- 토 지 : 335,001m²
- 기준가격 : 689,487천원(가감평가 기준)

【 처분재산 】

☐ 산동면 도중리 산116번지(교환)

- 토 지 : 48,397m²
- 기준가격 : 822,749천원(가감평가 기준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, 교환하는 것으로써 취득 3건 처분 1건임
-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건은
 - 구미시 공단동 267번지의 토지 10,200㎡와 건물 6,951.24㎡ (가감정가 3,118,995천원)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것임
 - 본 건은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력으로 초창기 창업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 제공과 각종 지원시설 활용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-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 교환건은
 - 사유림인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 116번지 48,397㎡ (가감정가 822,749천원)를 처분하고, 사유지인 선산읍 생곡리 산 48-1번지의 2필지 335,001㎡ (가감정가 689,487천원)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것임
 - 본 건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에 대한 산동면 발전지원기금 추진사업인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사유임야 교환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
 - 교환 재산으로서의 타당성 여부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문제점은 없는지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